

## 4.5.4 예·체능특기자운영규정

제정 2000. 04. 21.  
개정 2009. 09. 07.  
개정 2013. 08. 06.  
개정 2018. 07. 26.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예·체능특기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예·체능지도위원회설치) 예·체능활동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예·체능 지도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### 제2장 지도위원회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학생복지처장, 교무처장, 기획연구처장, 실용음악학과 교수 1인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간사는 학생복지과장이 그 직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3.08.06, 2018.07.26>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며,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예·체능 특기자 선발
2. 특기자의 장학혜택
3. 체육비 예·결산의 심의
4. 경기의 평가 및 종합적인 경과보고
5. 삭제 <2013.08.06>
6. 본 규정의 개정 및 기타 예·체능 관계에 관한 제반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본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복지처에서 관장한다.

### 제3장 예·체능특기자

제7조(자격) 국가 및 지방 관련부처에서 예·체능 특기자로 결정된 자.

제8조(선발) 특기자의 선발은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.

제9조(제출서류) 예체능 특기자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입학원서(본 대학교 소정양식)
- 2. 경기실적 증명서
- 3. 기타 관련 증빙자료

제10조(특전) 특기자의 특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위원회에서 결정된 장학혜택 부여
- 2. 학교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수업출석에 구애 받지 않고 출전할 수 있다.
- 3. 재학 중 학점취득은 특기부분의 실적에 따라 <별표 1>의 기준에 의거 부여할 수 있다.
- 4. 졸업종합시험은 특별 사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징계) 특기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, 자격 상실, 성적평가절하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.

- 1. 학칙 및 제반학사 내규를 위반한 자
- 2. 자의로 휴학 및 군 입대를 한 자
- 3. 감독(코치)의 지도에 불응하고 태만한 자로 특기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된 자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<개정 2013.08.06>

학점인정기준

등급	인정학점	평 가 기 준	기타
1등급	A°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. 전국 대회 4강 이내 입상자</li> <li>. 국가대표(주니어 포함)로 국제대회 참가 또는 활동하고 있는 자</li> <li>. 전국규모 경연대회 장려상 이상 수상자</li> </ul>	대회 주전선수 및 후보 선수에 한함.
2등급	B°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. 전국규모대회 개인, 단체 입상</li> <li>. 지방대회 개인, 단체 우승 및 입상</li> <li>. 전국 및 지방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</li> </ul>	
3등급	C°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. 각종 소속단체에서 모교의 명예를 빛내고 있다고 인정받은 자</li> </ul>	